#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64 발의연월일: 2024. 12. 26.

발 의 자:황정아·이기헌·조인철

이병진 • 황명선 • 주철현

이용우 • 조계원 • 박용갑

박지혜・김영환・정태호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업 연구개발 장려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 하는 한편, 공제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경감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10%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100분의 35"를 각각 "100분의 45"로, "100분의 50"을 각각 "100분의 60"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0분의 35"를 각각 "100분의 45"로, "100분의 50"을 각각 "100분의 60"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00분의 50"을 각각 "100분의 60"으로, "100분의 65"를 각각 "100분의 75"로,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70"으로, "100분의 75"를 "100분의 85"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60"으로, "100분의 65"를 "100분의 75"로,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
면) ①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면) ①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u>100분의 35</u> [대통령령으로 정하	<u>100분의 45</u>
는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	
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신	
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	
부설연구소"라 한다)의 경우에	
는 <u>100분의 50</u> ]를, 과세기준일	<u>100분의 60</u>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u>100분의 35</u> (신성장동	<u>100분의 45</u>
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	
구소의 경우에는 <u>100분의 50</u> )	<u>100분의 60</u>
를 각각 <u>2025년 12월 31일</u> 까지	<u>2030년 12월 31일</u>
경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
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
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
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
<u>00분의 35</u> (신성장동력·원천기
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
우에는 <u>100분의 50</u> )를, 과세기
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재산세의 <u>100분의 35</u> (신
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
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
<u>의 50</u> )를 각각 <u>2025년 12월 31</u>
<u>일</u> 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
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
호가목2)에 따른 중견기업이
기어브서여구스에 지저 사요하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 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2
<u>1</u>
00분의 45
<u>100분의 60</u>
100 브 이 45
<u>100분의 45</u>
<u>100분</u>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 0분의 65)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원 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5)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 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 른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기업부 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신 성장동력 · 원천기술 관련 기업 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 의 75)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 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 00분의 50(신성장동력・원천기 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 우에는 100분의 65)을 각각 20 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u>25년 12월 31일</u>까지 경감한다. ⑤ (생 략)

<u>10</u>
0분의 75
100분의 60
<u>100분의 75</u>
2030년 12월 31일
<b>4</b>
<u>100분의 70</u>
<u>100분</u>
<u>9</u> 85
<u>1</u>
00분의 60
<u>100분의 75</u> <u>20</u>
30년 12월 31일
⑤ (현행과 같음)